

부 산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0가소124298 손해배상(기)
원 고 ◇운수 주식회사
대표이사 정D, 정D1
지배인 김D2
피 고 정B (56년생, 남)
소송대리인 배우자 강E
변 론 종 결 2010. 11. 5.
판 결 선 고 2010. 11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,624,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. 3. 10.부터 2010. 11. 19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2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6,702,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. 3. 10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책임의 발생

피고가 남C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를 건네 주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석하였던 점,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금하고 있는 범죄행위로서 음주자가 운전을 할 경우에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큰 점, 2차로에서 진행중인 남C이 1차로에 진행중인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을 거의 90도로 충격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는데, 위와 같은 충격형태는 남C의 음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, 피고는 남C의 음주운전에 가공 내지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.

2. 책임의 범위

5,624,600원(=수리비 5,064,600원 + 운휴손해 56만 원)

판사 문춘언 _____